

하도급계약 안전보건 특약

2024. 02. 부

DW 동원개발

목 차

I. 일반사항(계약문서)	1
II. 산업안전보건관리	1
제 1 조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분장(산업안전보건법 15,16,17 조)	1
제 2-1 조 안전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38, 80, 84 조)	1
제 2-2 조 작업의 지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9 조, 제 156 조, 제 162 조)	2
제 2-3 조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비용	3
제 3 조 안전보호구 착용	3
제 4 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 29, 31, 32 조)	3
제 5 조 합동안전점검 실시 및 협의체 구성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 64 조)	4
제 6 조 근로자의 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 110, 125, 129, 130 조)	4
제 7 조 재해발생 조치 및 사전예방 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 57 조)	6
제 8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 72 조)	6
제 9 조 전기 재해의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 80 조)	7
제 10-1 조 화재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10
제 10-2 조 폭발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 80 조)	11
제 11 조 가설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13
제 12 조 안전시설 / 설비의 보존	13
제 13 조 근로자의 채용 기준	13
제 14 조 안전조끼 착용	15
제 15 조 차량종합보험 가입 및 출입증 부착의무	15
제 16 조 교통안전수칙	15
제 17 조 안전보건 규정 이행	18
제 18 조 현장 정리 정돈	19

제 19 조 보안지역 출입금지 및 사진 촬영 금지	19
제 20 조 상벌사항	19
제 21 조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	19
제 22 조 작업중지 / 퇴장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51 조)	19
제 23 조 시공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제 24 조 장비의 사용	20
제 25 조 안전수칙 위반자 작업배제 (OUT SYSTEM)	20
제 26 조 사전 작업허가제 (PTW)	21
제 27 조 기타 사항	22
별 첨 1-1. 가설건축물(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관리 기준	23
별 첨 1-2. 가설건축물(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방범창 설치기준	24
별 첨 2. 건설기계/장비별 안전장치 의무 사항	25
별 첨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27
별 첨 4.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33
별 첨 5.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34
별 첨 6. 안전보건 특약조건 이행 약속서	36

I. 일반사항(계약문서)

- ① (주)동원개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명시한 안전보건 관련 내용은 하도급계약 안전보건 특약 조건을 포함 한다.
- ② 하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II. 산업안전보건관리

제1조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분장(산업안전보건법 15,16,17조)

- ①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금액 20 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0 명 이상 공사는 필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당사에 관련 서류(선임계, 재직증명서, 교육 이수증)를 제출한다.
 2.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3.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자는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해 업무 협조는 물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금액 100 억 이상일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영 별표 4)에 준하는 자격보유자로 현장에 상주하고 관련 비용은 계약고에 반영한다.

제2-1조 안전상의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 80, 84조)

- ① 작업 수행상 유해·위험이 발생 예상되는 다음 장소 및 작업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안전조치(가시설물의 구조검토, 조립도 및 작업계획 작성, 방호 및 안전장치 부착,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작업환경 측정 및 표지판의 설치, 안전담당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토사, 구조물 공작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흠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3.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4. 추락위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장소
 5. 비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6.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하는 장소
7.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것(5 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8. 분진, 소음, 진동, 맨홀작업 및 산소결핍장소 등 밀폐된 장소
9. 유해·위험기계 기구, 차량건설기계, 양중기 등을 이용하는 작업.
10. 전압이 75 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1. 인접도로, 인접담장 및 인접건물에 대한 안전시설등 사전조치
12.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화, 전력, 고압가스 등)에 대한 사전조사
13.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② 또한, 하도급 계약상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비가 세부 내역화 되어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현장 여건상 작업진행 중 긴급한 유해·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비용은 현장 확인 후 실비 정산토록 한다.

제2-2조 작업의 지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56조, 제162조)

-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 조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 중 다음 작업에 대해서는 동규칙 제 39 조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 및 작업 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 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 미터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길이가 30 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 ② 또한, 동규칙 제 39 조, 제 156 조 및 제 162 조에 따라 향타기 및 향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과 리프트 및 승강기를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4.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일

제2-3조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비용

- ① 하도급 계약상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비가 세부 내역화 되어 반영된 경우, 작업 전 사전 위험장소(협력사의 판단장소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시설물)에는 필히 안전시설물(발주자의 표준기준)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협력사가 안전시설물등 안전상의 조치를 미이행 시는 발주자가 통합하여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서 공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3조 안전보호구 착용

- ① 작업개시 전 해당 근로자 및 직원의 인원 및 작업내용에 맞게 안전 보호장구를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현황을 발주자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호구 미지급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② 단, 안전보호구는 노동부(산업안전공단)검정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표준화된 안전보호구를 지정할 경우 협력사는 동제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류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안면, 방음용귀덮개, 보호복, 기타)
- ③ 해당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비 예산 초과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안전용품비는 현장 확인 후 실비 정산토록 한다.

제4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 31, 32조)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첨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① 수급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제재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63 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등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소속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상기 3 항 및 원사업자의 사규에 의거하는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소속 근로자를 참석시켜야 하며,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제재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④ 수급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2 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사규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참석시켜야 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수급사업자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의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적소유권이 인정되는 안전·보건 교육 자료의 외부반출을 금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조 합동안전점검 실시 및 협의체 구성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① 발주자의 합동 안전점검 및 노·사 협의체 구성원으로 협력사의 대표, 소장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협력사는 점검 실시 및 개선조치, 노·사협의체의 운영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근로자의 보건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110, 125, 129, 130조)

- ① 근로자의 건강진단
 1.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건강상담 등 발주자의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한 후 발주자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일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을 현장에서 실시할 시 적극 협조한다.
 3.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이후 대상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사후 관리 소견에 따른 건강상담 등 발주자의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한 후 발주자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주요 유해인자별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세부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조)

No.	유해인자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대상
1	화학적인자 <u>164</u> 종	유기화합물(<u>109</u> 종), 금속류(20 종), 산 및 알칼리류(8 종), 가스 상태 물질류(14 종), 허가대상 유해물질(12 종), 금속가공유(1 종) 등
2	분진 7 종	광물성/곡물/면/목재/석면분진, 용접 흄 및 유리섬유
3	물리적인자 8 종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u>라디오파</u>
4	야간작업 2 종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5.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사후관리 소견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자 등을 통한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중 치료 등의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를 독려하고 발주자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6.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진단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 근로자 현황을 수시로 파악한다.
- ② 유해물질의 취급 또는 작업(분진, 밀폐공간,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등)시 근로자의 건강상 조치
1. 유해물질의 취급 또는 작업시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지급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유해물질의 취급 또는 작업시 이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작업환경 측정, 방진·방음시설, 비상연락·자동감지장치, 환기장치, 살수설비, 국소배기장치, 근로자의 출입에 대한 인원점검, 감시인 배치, 소음감소 장치, 작업장의 청소·청결, 휴게시설, 보호구 지급, 구급용구 비치, 응급조치 및 안전보건 교육·훈련 실시, MSDS 및 경고표지 게시 등)를 하여야 한다.
 3. MSDS 작성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발주자 보건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제출시 화학물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MSDS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그에 따른 위험요인 도출 및 보건조치 사항(보관방법, 보호구 착용,

경고표지 부착 등)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4.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직무스트레스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재해발생 시 조치 및 사전예방 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① 계약 완료 후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 보고체계 등 비상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재해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시 조사팀 구성 및 재해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계절별(동절기, 하절기 등)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작업자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재해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① 사용계획
 1. **낙찰된 협력사는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기준하여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집행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부 집행계획서 및 변경된 사유를 포함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비 적용 요율

구 분		하도급 요율
건축	골조(철근콘크리트) / 철골공사	직접공사비*1.0%
	석공사 / 금속 / 데크공사	직접공사비*0.5%
	내장목공, PL창호, 목창호	직접공사비*0.2%
	유리, 도장, 가구, 가전공사	
	건식PD, 도배, 마루, 사인물 등 기타	
	습식공사(조적, 미장, 방수, 타일 등)	직접공사비*0.1%
	가설사무실, 울타리	
외주장비, 자재납품		
전기	전기, 전기소방, 통신설비공사, 조명등기구	직접공사비*0.3%
	M/H공사, 임시전기공사, 수배전, 비상발전기	직접공사비*0.2%
	H/N, 무인경비, 주방TV폰, 욕실전화기	
기계	기계, 기계소화, 도시가스, 자동제어, 환기시스템	직접공사비*0.3%
	지열공사, A/C(옵션), 부대시설AC, A/C선배관	

	E/L, 기계식주차기	
	가설수도, 가스보일러, 빗물이용, 오수처리, 조립식물탱크	직접공사비*0.2%
	소화기구, 장비류 납품 설치	
토 목	건축 (흙막이, CIP)토목공사, 부대토목	직접공사비*1.0%
	조경	직접공사비*0.5%
	계측	직접공사비*0.2%
기 타	지하수개발, 폐공공사, T/C & H/C 설치 해체, M/H 공사	직접공사비*0.2%

▶ 안전시설물별도 반영

직접비 : 가시설 시공 연계 시설 (터파기 상부 난간, 비계난간, 가설통로 난간)

②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매월 25 일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사용 정산

1) 현장 투입 전에 품목, 단가, 사용처를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구매, 발주한다.

2) 계약 종료시 계약금액 내에서 실사용 금액을 정산처리 한다.

3) 시설물 설치

- 인건비 : 일위대가표를 작성, 발주자 시공, 안전 승인 후 정산

- 자재비 : 비소모성 자재인 강관파이프는 임대가 반영

4) 외주용역 : 3 개업체 이상 견적(1 개 업체는 발주자가 견적)

④ 적용제외 항목(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참조)

1. 타 법 및 계정 적용받는 항목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별표 7 참조)

-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

2)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3)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 휴게시설, 안전기원제 행사기념품 및 뒷풀이음식,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

2.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

1) 협력업체 겸직안전관리자

2) 공사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시설(터파기난간등, 가설구조물 안전난간...)

- 3) 현장내 차량유도 신호수(근로자 보호 목적의 신호만 가능)
- 4) 중량물 작업 자재 인양, 하역 신호
- 5) 공사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제9조 전기 재해의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전기를 사용하는 협력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1) 전기담당자를 임명하여 매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2) 작업전 전기를 이용하는 장비 및 전동공구, 전원의 배선, 분전반의 이용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 3)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표지판을 전기시설, 조명시설 등 요소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4) 사용 기기의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재료는 규격품(『전』, 『검』, 『KS』)을 사용 한다.
- 6) 모든 콘센트, 플러그, 전동공구류는 접지선을 연결한다.

2. 가설분전함의 사용

- 1) 분전반은 방수형 비전도체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교통 또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3) Main 분전함에는 개폐기를 모두 NFB(no fuse breaker)로 부착하고 분기 분전함에는 주개폐기만 NFB 로 하고 분기용은 ELB(electric leak breaker)를 부착하여야 한다.
- 4) 임시조명등, 전열공구류, 양수기는 반드시 ELB 로부터 전원을 인출 받아야 하며 용접기류 등 고정식 작업장비는 NFB 로부터 전원을 인출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5) 분전함 내부에는 회로접촉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6) 분전함 외부에는 위험표지판을 부착하고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 7) 분전함 외부에서 전등, 열의 전원 인출을 할 경우에는 방수 Receptacle (소켓종류)을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8) 분전함은 전기담당자가 관리하도록 하며 작업자 임의로 열고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가설전선의 사용

- 1) 간선 및 분기전선은 접지선이 포함된 Cable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가설전선은 공중가설을 원칙으로 하며 통행에 지장이 있을 시는 땅속에 매설하거나 각재 및 Pipe 로 보호하여야 한다.
 - 3) 사용하는 모든 가설전선은 절연피복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연결 접속된 부분은 Taping 처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4. 용접기의 사용
- 1) 용접기는 직류용접기를 사용한다.
 - 2) 용접기 1 차측에는 반드시 N.F.B(No fuse breaker)나 Fuse 를 설치하고, 2 차측 회로는 용접용 Cable 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Pipe 등을 연결해서는 안되며 30m 이내로한다.
 - 3) 단자 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카바로 방호 하여야 한다.
 - 4) 홀더선 등이 바닥에 깔리지 않도록 가공설치 및 바닥 통과시 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 5) 용접기 사용 전에는 용접기와 배선을 점검하고, 용접공은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나 피복은 건조 상태로 작업하여야 한다.
5. 임시조명등
- 1) 투광기는 기동성이 좋고 안전대책이 구비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임시조명등에는 모두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임시조명등의 전원은 누전차단기에서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이동식 등기구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킬 경우 견고한 받침대를 사용하여야한다.
6. 전동기기
- 1) 고정식 작업장비는 접지 공사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기드릴, 그라인더, 양수기 등의 이동식 전동공구는 ELB 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3) 장비 또는 전동공구의 현장 반입전 기기의 누전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입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전동기기(드릴, 그라인더, 핸드톱, 핸드커터)에 사용하는 전선은 3Core 를 사용하되 1Core 는 공구 외부에 접지를 한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 5) 전동기기는 가급적 2 중 절연구조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1조 화재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① 다음 화재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1) 동절기 난방기구는 온풍기, 온열라디에이터를 사용하고 열선사용 난방기는 사용 금지한다(별 첨 1-2.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방법창, 난방기 설치 기준)
- 2) 화재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하여 유사시 정기적인 화재진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창고 등에 제품을 적재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발화위험 물질은 따로 분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4) 작업장에서 화재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작업장, 가설 사무실, 컨테이너(창고 및 휴게실 포함) 등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및 화재감지 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그 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별첨 1-1. 가설건축물(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관리기준 준수).
- 6) 가설 사무실 및 컨테이너(창고, 휴게실 포함)의 방법창 설치 기준은 별첨 1-2.를 따른다. 출입문 1 개 또는 출입문 2 개 이상 일지라도 내부를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법창은 설치 불가하다. (화재 시, 대피 목적)

2.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

- 1)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 2) 개폐기(두꺼비집)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습기나 먼지가 없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3) 개폐기에 사용하는 퓨즈는 규격퓨즈를 사용하고 퓨즈가 자주 끊어질 경우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 개선하여야 한다.

3. 인화성 물질에 대한 화재예방

- 1) 휘발유, 가스, 화학약품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곳에는 "금연구역" 표시판, MSDS 표지를 붙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 2)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담배꽂이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도록하여야 한다.
- 3) 유류는 유류 이외의 다른 물질과 함께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유류저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솔린 등 인화물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

여야 한다.

- 4) 고체연료 주변은 늘 깨끗이 하고 불이 붙어있는 상태로 이동을 해서는 안되며,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 5) 열기구 가까이에 가연성 물질을 놓아서는 안되며, 한 방향으로 열기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열기구의 경우에는 가연물이 그 방향으로부터 적어도 1m 이상은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
 - 6) 열기구의 받침은 열을 전달 받는 금속체를 피하고 석면과 같이 열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7) 주유소나 기타 위험물취급 장소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고 불조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용접 작업시 화재예방
- 1) 소화기나 소화수 등을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 2)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 가연물을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3) 천정 부근에서 용접작업시 불티비산 방지포 설치 및 불티가 떨어져 화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4) 화기(용접)작업시 화재감시등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화기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1 조 2)
5.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작업시 소화기를 설치하고 작업한다
- 인화성 · 가연성 ·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 용접 · 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등

제10-2조 폭발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① 다음 폭발재해 예방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용기의 저장

- 1) LPG, 유류 등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충전용기와 화기와 의 거리는 최소한 우회거리 8m 이상을 유지하고(이내인 경우 차단조치 등 필요한 조치)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매일 보관 및 사용상의 안전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LPG 충전 용기는 직사광선(6 시간 이내)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40°C 이하가 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의 재료를 사용한 슬레이트 등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3) LPG 충전 용기는 실외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습기 등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커트 밑부분에 콘크리트 벽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용기의 저장소 주위에는 수분, 유류, 유기물질, 화기 등 발화하기 쉬운 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용기는 실병과 공병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전도, 전락으로 용기본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수평한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가능하면 쇠사슬 등으로 고정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현장 내에서 사용 중에 잠시 동안 임시 보관하는 가스 용기일 경우 작업종료 후 캡을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 6) 용기는 반드시 밸브를 잠궈서 보관하여야 한다.
- 7) 보관소에는 소화기(ABC 형 분말소화기, 3.3 kg 2대 이상)와 가스누출 탐지용액을 구비하여야 한다.
- 8) 용기 보관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고, 용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2. 용기의 운반

LPG, 유류 등 용기는 화기부근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충전용기의 상, 하차 작업시 난폭한 취급으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낙하충격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T/C 등의 양중장비로 운반하지 않는다.

용기를 운반하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용기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하여 중량물 취급 주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취급 및 사용(용접작업 포함)

고압가스의 용기 및 밸브에 성애가 끼어 있을 때 40°C이하의 물로 녹여야 하며 절대 화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밸브의 개방시 스페너, 파이프렌치 등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전도되지 않도록 운반구를 이용하여 세워서 사용하여야 한다.

LPG는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호스와 결속은 밴드클립을 사용하여 누기되지 않도록 조인다.

작업중 용기를 교환할 때나 가스사용을 일시 중단할 때는 반드시 용기의 밸브와 조정기의 핸들, 토오치의 양측밸브를 모두 잠궈두도록 한다.

작업장소 부근에 인화성물질 등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화기 및 감시인을 배치한다. (용접, 용단 작업자는 휴대용 개인소화기를 상시 휴대한다)

작업전 작업장소의 가스누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특히 작업 중단후 재개할 때)

4. 용기부품 및 고압호스 취급

- 1) 용기를 열 때는 서서히 열어서 고정 압력계의 지침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한다.
- 2) 조정기 및 압력계는 당해 가스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고무호스는 오래되어 경화된 것은 교환하고 연결부위로 구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제11조 가설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 ① 노동부 검정 품목인 가설기자재 중 의무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한국가설협회의 검정에 합격된 가설기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미 검정된 가설 기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미검정 가설 기자재 사용시 발주자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12조 안전시설 / 설비의 보존

- ① 작업 전 부득이 안전시설, 설비를 해체할 경우 발주자(안전보건관리부서)의 허락을 득해야 하며, 임의 해체 후 원상 복구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복구 후 그 비용을 협력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공제한다.

제13조 근로자의 채용 기준

- ① 근로자 채용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 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에서 정하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근로자
 2.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는 18 세 미만자
 3. 관계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
 4. 건강진단 시 업무 적합성 평가 결과 근로제한 및 금지 소견자

② 신규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 기준을 준수한다.

1. 신규채용자

- 1)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후 이수자에 한하여 투입한다. (미이수자 투입 금지)
- 2) 혈압측정 시 정상 범위를 초과할 경우(고혈압, 저혈압) 재측정 또는 의사소견서를 대체 제출해야 하며, 업무적 합성평가 결과 이상소견 (근로제한 및 금지 등) 시 투입을 금지한다.

가) 고혈압 기준 :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확장기 혈압 90mmHg 이상

나) 저혈압 기준 :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60mmHg 미만

2. 고령근로자 (만 66 세 이상, 투입일 기준)

1) 고령근로자 채용 시 아래 기준에 따른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 상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유효기간	비고
모든 고령근로자	건강진단 수검 및 결과	작업 배치 전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비고1)
고령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의심질환자 및 유질환자	업무적합성 확인 위한 의사소견서 추가제출	작업 배치 전	채용일 기준 1주일 이내	(비고2)

(비고 1) 단, 채용 시 건강진단 또는 배치전/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 조에서 정한 검사항목 포함 및 상세 검사결과(수치) 표기 결과에 한해서 인정

(비고 2) 확인사항 : 해당 직무에 대한 업무수행 가능여부 및 상세 검사결과 표기

- 2) 고령근로자 채용 시 투입 승인요청 및 주기적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상태 확인 및 투입 현황을 일일단위로 발주자에 보고 한다.
- 3) 고령근로자 투입 시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 승인서 제출 시 건강진단 결과, 의사소견서(해당자 限)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4) 고령근로자 채용 시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작업을 금지한다.
- 5) 고위험 작업 투입 금지 (검진결과 정상 근로자 포함)

① 주 5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⑤ 소음 작업[80dB(A) 이상]
② 고정적인 야간작업	⑥ 밀폐공간 작업
③ 운전작업, 고소작업 (사다리 및 작업대 사용 작업 등)	⑦ 화학물질 취급 작업
④ 고열작업 또는 한랭작업	⑧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발주자는 업무 적합성평가 결과 확인 후 고위험 작업 투입여부를 검토 후 승

인한다.

3. 외국인근로자

취업 전 외국인근로자가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여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비자가 없는 근로자는 투입을 금지한다.

제14조 안전조끼 착용

- ① 화재감시인, 신호수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도자는 구분 가능한 별도의 조끼를 착용 시켜야 한다.

제15조 차량종합보험 가입 및 출입증 부착의무

- ① 현장내에서는 운행하는 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만이 운행할 수 있고 협력사는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운행 전에 발주자에 제출하여, 차량 출입증을 교부 받아 차량에 부착 후 현장내 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교통안전수칙

- ① 당해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하여 현장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의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현장내에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5~20km) 이상 주행하지 못하며, 2 회 이상 위반시 현장에 출입 할 수 없다.

1. 제한속도의 준수

-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지정된 제한속도(시속 5~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도 등의 방지

- 1) 근로자의 위험방지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당해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길의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노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유도자 배치 : 갓길 또는 경사지 등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협력사는 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접촉의 방지

- 1) 근로자 출입제한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유도자(차량 신호수) 유도 준수 :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 3) 후방카메라 설치 : 밀폐된 캡에 조종석이 설치된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실내·외 후사경 외에 후진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조종사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수 미배치 공중에 한함)

3. 운전위치 이탈시의 준수사항

- 1)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때에는 당해 운전자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버킷, 디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 나)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다) 운전원은 보호구(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후 운전위치에서 이탈할 것
 - 라) 전담운전자 외 운전을 금지하고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시 반드시 장비로부터 시동기를 제거할 것

4. 건설기계의 이송

-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 나) 발판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다) 마대,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라)

5. 운전석 외의 탑승금지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 외의 위치에서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6. 작업시작 전 점검 등

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 전에 다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가)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 상태

나) 타이어의 상태

다) 경보장치 작동 상태

라) 부속장치의 상태

7. 굴착 작업시 준수사항

1) 굴착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기계가 운반될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운전은 자격을 소지한 지정된 운전자가 한다.

다) 토사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운반 시에는 유도자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한다.

라) 운전자 외에는 승차를 금지한다.

마) 운전석에 승강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고, 뛰어 타거나 내리지 않도록 주지시키며 통제한다.

바)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사) 통행인이나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의해서 운전한다.

아) 규정된 속도를 지킨다.

자) 기계의 작동범위 내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차) 터널, 지하실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조치한다.

카) 위험장소에는 기계 및 작업자, 통행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고 감시인을 배치한다.

타) 기계를 차량으로 운반시는 원칙적으로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한다.

파) 기계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한 후 안전담당자가 확인한다.

- 하) 전조등, 경보장치 등이 없는 기계를 운행시키지 않는다.
- 거) 운전자가 토사를 적재한 채 운전위치를 이탈하지 않는다.

8. 기타 작업시의 안전수칙

- 1) 운전자는 운행 및 작업전 도로상태, 교통상태, 기상상태, 장애물 등을 미리 숙지 하여야 한다.
- 2) 운전자는 누유, 누수 부분, 유리, 거울, 각종 라이트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 점검해야 하며,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3) 작업종료시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 가) 장비를 멈춘다.
 - 나) 부수장치를 지면으로 내려놓는다.
 - 다) 변속레버를 중립에 놓고 잠근다.
 - 라)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다.
 - 마) 엔진을 멈춘다.
 - 바) 모든 잠금장치를 잠그고 키를 뺀다.
 - 사) 장비에서 내려온다.
 - 아)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제17조 안전보건 규정 이행

- ① 공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위험성을 평가, 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안전보건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요구하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위험성 저감대책 이행
 - 1) 최초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위험성 평가를 참고하여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2) 수시 위험성평가 : 협의체회의 3~4 일 전에 한달간 있을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 및 등록부를 제출한다.
 - 3) 작업계획서 : 작업허가서에 수시 위험성평가 내용을 포함하여(연계성확보) 주간단위 위험성평가를 작성/제출하고 상기 위험성 저감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법규 파악 및 준수
 3. 안전보건 교육, 훈련실시 및 협조

4. 안전보건 관련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절차 수립, 이행
6. 안전보건 협의 및 의사소통 절차 수립, 이행
7. 안전보건 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
8. 안전보건 관련 기록 관리

제18조 현장 정리 정돈

- ①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협력사의 비용으로 작업 종료 전 자재정리 및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 안전통로 확보, 안전표시 설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리정돈을 위한 쓰레기통, 쓰레받기, 빗자루 등을 작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수거한다

제19조 출입금지 및 사진 촬영 금지

- ① 공사구간 내 거래처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사현장 내에서는 사진 촬영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직원과 동행, 촬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상벌사항

- ①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상벌사항을 시행한다.
- ② 안전보건규정 이행 및 특약조건 이행 평가는 1 회/반기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당 사 "안전보건관리 상벌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안전사고 발생시의 책임

- ① 상기 1 ~ 10 조 사항의 미 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는 협력사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 ② 재해자 보상을 위해 소요되는 민형사 합의금, 작업중단으로 인한 진단등 각종비용은 협력사의 부담으로 처리한다(23/08/25)

제22조 작업중지 / 퇴장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①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39 조(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하도급계약 (안전·

환경) 특약 조건」 제 2-1 조(안전상의 조치)의 결함이 발생 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 하여야 한다.

- ② 안전수칙 및 규정위반 또는 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인하여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필요한 시정요구나 지시를 한 때에는 협력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안전수칙을 위반한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명령, 작업배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① 동 특약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수립,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장비의 사용

- ① 현장내에 투입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특고법 기준 산재보험, 종합보험 (자손보험 포함)을 가입하고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종합보험증권 사본과 장비임대 계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장비는 가급적 제조일자로부터 10 년이하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10 년 이상의 장비일 경우 외부점검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15 년 이상의 장비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 점검기관 안전점검 대상 장비 : 이동식 크레인, 향타 및 향발기)
- ③ 안전인증 대상 장비의 경우 가급적 안전인증을 실시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인증 장비는 외부점검기관의 안전점검 실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장비 : 고소작업대, 카고크레인)
- ④ 사전점검, 유자격 운전원 배치, 운전원의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⑤ 수급사업자는 투입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별첨 2 '건설기계/장비별 안전장치 의무사항'에 기재된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공사에 투입하여야 한다.
(현장 반입 시 기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바, 안전관리비 처리 불가하므로 직접비에 반영하여 견적 요함)

제25조 안전수칙 위반자 작업배제 (OUT SYSTEM)

- 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안전수칙 위반제도(OUT SYSTEM)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주자가 필요한 지시를 한 때에는 협력사는 해당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안전수칙 위반자 특별교육
 작업배제 1 회 : 작업배제 24 시간(1 일) 후 현장 자체 교육 수요자에 한하여 재투입
 (현장 자체교육 : 당사 1 시간, 협력업체 1 시간, 총 2 시간으로 진행)

구 분	적용기준
작업배제 (아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m 이상 고소작업 시 전체식 안전대 미착용 및 미체결 - 1.8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턱끈포함) - 비계, 틀비계,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미착용(턱끈 포함) - 비상주 차량 운전원의 경우,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자재를 상하차 하거나 차량 상부에 올라서는 경우 작업배제(해당업체 통보) → 차량 출입금지 2.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3 이하 시, 음주수치 "0"이 되기 전까지 작업 투입금지 2. 출입 통제구간 임의 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양물 작업구간, 밀폐공간, 설치/해체 작업구간으로 웨빙띠, 경고 표지판 등으로 통제된 구간 임의 출입 - 신호수 등 관계자의 통제 미준수 3. 무면허 장비 운전 및 건설장비 안전장치 임의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지급받은 또는 기설치된 안전장치를 해체한 경우 4. 안전시설 무단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추락방지망 등) 무단 해체 -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방호선반, 낙하물방지망 등) 무단 해체 - 안전대 걸이시설, 생명줄 등 훼손 5. 기초교육 미이수

제26조 사전 작업허가제 (PTW)

- ① 최초 착공전 안전관리계획, 기계기구설치·해체·조립, 제 2-1 조 안전상의 조치에 해당되는 작업 대하여 작업 실시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자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전작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작업허가서에 기재한 위험저감 조치가 미 이행한 경우, 발주자는 작업중지 등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주말·휴일 작업시 작업내용, 안전대책, 관리감독자 지정 등 주말·휴일 작업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본조의 사전 작업허가제는 하자보수 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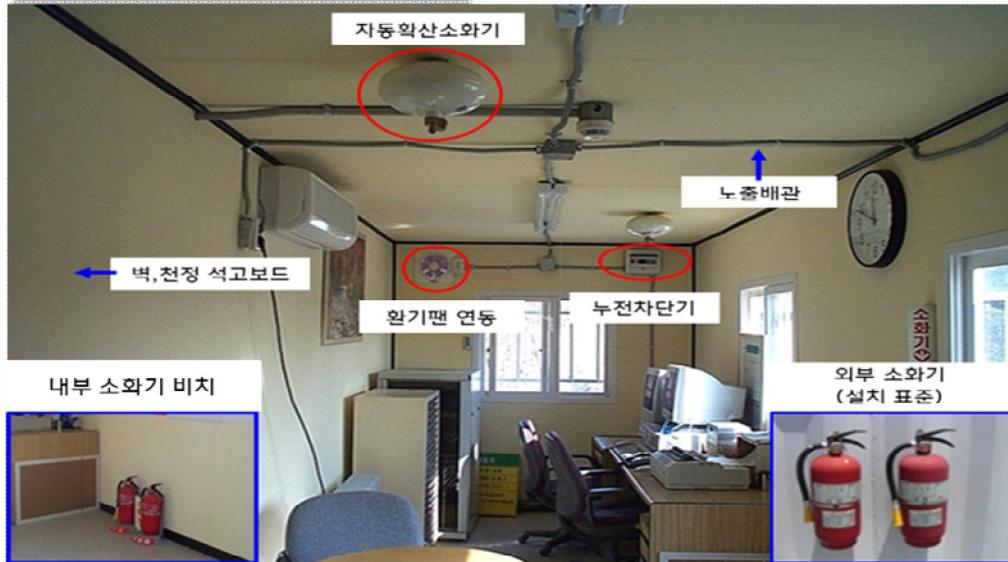
제27조 기타 사항

- ① 상기조항(1 조~26 조)을 이행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내역서의 직접비 등에 포함 하여야 하며, 누락된 비용은 전적으로 협력사가 책임지며 내역서상의 각 공종의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별 첨 1-1. 가설건축물(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관리 기준

순	구 분	기 준
1	배관처리 및 차단기 (공통)	■ 전선 스틸배관 노출 처리 / 누전차단기 설치
2	소화기 (공통)	■ 자동확산 소화기 : 9m ² 당 1 개 - 화기 사용장소(식당, 주방 등) : 실당 상부에 1 개 ■ 분말소화기(3.3kg) - 사무실 : 25m ² 당 1 개 - 컨테이너 : 단독형 2 개, 모듈형 9m ² 당 1 개
3	환풍기 연동	■ 전등 스위치 연동 (공통)
4	자동화 탐지 시설 (가설 사무실)	■ 화재감지기 - 사무실 천정 설치 ■ 비상벨(부경보 설비) - 경비실 설치, 사무실과 연동
5	탐지 설비 (가설 사무실)	■ 출입문(비상구) 상부 유도등 설치 - 전원 차단 시 20 분 이상 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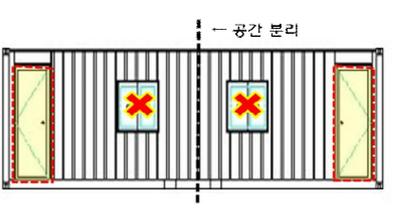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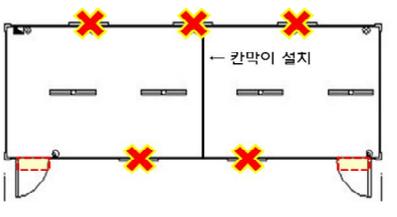
※ 가설 사무실 및 컨테이너



※ 가설 사무실



별 첨 1-2. 가설사무실 및 컨테이너 방법창, 난방기 설치기준

① 출입문 1개	② 출입문 2개 이상	
	내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 (1개 공간 - 2개 이상 출입문)	내부를 별도 공간으로 사용 (1개 공간 - 1개 출입문)
 	 	 
<p>➡ 방법창 설치 불가</p>	<p>➡ 방법창 설치 가능 (단, 출입문 폐쇄 금지 - 비상탈출구 확보 목적)</p>	<p>➡ 방법창 설치 불가</p>

※ 컨테이너 : 협력사 사무실 및 창고 또는 휴게실 용도 모두 포함

■ 사용 가능 난방기구



전기 방열기
(7평당 2,500W기준)



전기 온풍기



전기 석유난로

전기 석유난로
컨테이너 내부
사용 금지
일반사무실은 방화사,
밀받침, 방호울,
소화기 비치 시 허용

■ 사용 불가 난방기구



화원 및 열원이 직접 노출되는 난방기구 사용 금지

전기장판, 전기 히팅 판넬 및 임의 제작 변형된 전기 제품 사용 금지

단, 옥외 구간으로 화재 위험이 없는 장소는 현장 자체 승인 후 사용

별 첨 2. 건설기계/장비별 안전장치 의무 사항

(현장 반입 시 기장착 되어 있어야 하는 바, 안전관리비 처리 불가하므로 직접비에 반영하여 견적 요함)

순 번	장비명	안전장치 분류	
		법정의무사항	법적사항 외 추가사항
1	굴삭기	후진경보기, 안전레버, 브레이크 및 클러치, 후 해지장치	후방카메라, 접근방지봉, 버킷이탈방지핀(자동 안전핀 장착장비 포함), LED 바(터널구간, 지하층작업 限)
2	덤프트럭	후방감지기, 후사경, 브레이크 및 클러치,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3	지게차	후진경보기, 후사경, 브레이크 및 클러치	후방카메라, 후방접근방지 센서, LED 바(터널구간, 지하층작업 限)
4	크롤러 크레인	권과 및 과부하방지장치, 후 해지장치	후방카메라, 드럼카메라
5	하이드로크레인	권과 및 과부하방지장치, 후 해지장치, 아웃트리거 고정장치	드럼카메라
6	카고 크레인	권과 및 과부하방지장치, 후 해지장치	-
7	이동식 타워크레인	권과 및 과부하방지장치, 후 해지장치, 아웃트리거 고정장치	후크카메라(사각지대 발생 시 限) , 후크경보기, 드럼카메라
8	믹서트럭	후방감지기, 후사경, 브레이크 및 클러치,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9	펌프카	후진방지 스톱퍼, 아웃트리거 고정장치	-
10	C.P.B	-	-
11	천공기	브레이크 및 클러치, 후사경	후방카메라(탑승식 限)
12	로더	후사경, 경보등,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13	스키드로더	후사경, 경보등,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14	항타기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드럼카메라, 안전방호장치(세이프티 하우스 or 낙하물 방지장치)
15	모터크레이더	후사경, 경보등,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16	불도저	후사경, 경보등, 후진경보기	후방카메라

순 번	장비명	안전장치 분류	
		법정의무사항	법적사항 外 추가사항
17	타워크레인	권과&기복&과부하 방지장치, 충돌방지장치, 혹해지장치	후크카메라, 후크경보기
18	곤돌라	낙하방지&비상정지&권과방지& 과부하방지 장치	-
19	고소작업차(스카이)	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고정장치, 모멘트 감지장치	-
20	고소작업대(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상승중 주행방지 장치, 경보장치, 비상하강장치	-
21	고소작업대(자주식)	과상승방지장치, 상승중 주행방지 장치, 경보장치, 비상하강장치	-
22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경보장치, 과상승방지장치	-
23	갠트리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주행제한리미트	접근방지 센서(주행중 근로자 접근 시 작동중지)
24	건설용 리프트	출입문 연동장치, 3 상전원차단장치, 거버너, 브레이크 및 클러치	파워트레인(전선교임방지), 스토퍼&리미트

별첨 3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0. 12. 3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슬리트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터널 내에서의 발파 작업	장전·결선(結線)·점화 및 불발 장약(裝藥) 처리와 이와 관련된 점검 및 처리업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p>6.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p>	<p>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p>	<p>1)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p>
<p>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p>	<p>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의 취급업무</p>	<p>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p>
<p>8. 방사선 취급작업</p>	<p>가. 원자로 운전업무 나. 핵연료물질 취급·폐기업무 다.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폐기업무 라.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촬영업무</p>	<p>「원자력법」에서 규정하는 면허</p>
<p>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活線作業)</p>	<p>안전보건규칙 제 302 조제 1 항제 3 호 다목에 따른 고압의 전로(電路)를 취급하는 업무로서 가.정전작업(전로를 전개하여 그 지지물을 설치·해체·점검·수리 및 도장(塗裝)하는 작업) 나.활선작업(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p>	<p>1)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철도신호기능사 및 전기철도기능사 이상의 자격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p>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을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작업)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설치·해체 작업	1)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철골구조물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높이 66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안전보건규칙 제 256 조에 따른 위험물질등이 들어 있는 배관	1)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11.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타워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13.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	조종석에서의 조종작업	1)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4.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작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15. 흙막이 지보공(支保工)의 조립 및 해체작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깊이 31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6.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p>18. 표면공급식 잠수장비 또는 스쿠버 잠수장비에 의해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p>19. 롤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 등 점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p>		<p>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p>
<p>20. 양화장치(揚貨裝置) 운전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양화장치운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p>21. 타워크레인 설치(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p>22.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작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비고

1. 제 21 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에 따른 교육(144 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2. 2021 년 7 월 15 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 4 호의 2 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도로교통법」 제 80 조에 따른 운전면허(같은 조 제 2 항제 2 호다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 나. 3 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별첨 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5제2항·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종류	설치대상	설치기준
소화기	모든 공사작업장 전 대상(건축허가등의대상)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가 기본
간이소화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시 (작업지점으로 부터 25미터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비상경보장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설치 시 (작업 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 부터 5미터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
간이피난유도선	지하층·무창층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작업장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 시 (설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위치높이 1미터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디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

별첨 5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평가자 : 안전관리자

작성일:

협력업체	업 체 명		현 장 명									
	공사기간		평 가 기 간									
	공 종 명		202 / / ~ 202 / /									
	계약금액		평가자의견									
	공 정 율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	직위	성명	(인)					
평가내용			배 점	평가기준								평점
				A		B		C		D		
관리자 의식(23점)	협력업체 소장의 안전의식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3
	대표자 관심도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			5	3회	5	2회	4	1회	3	없음	0
	관리자 안전업무 협조			8	우수	8	양호	6	미흡	4	불량	2
교육및 안전계획 (20점)	위험성평가 작성 제출			4	100%	4	90%	3	80%	2	70%	1
	사전안전계획(장비 등) 수립			4	100%	4	90%	3	80%	2	70%	1
	신규채용, 특별교육 참여			4	100%	4	90%	3	80%	2	70%	1
	정기안전교육 참석율			4	100%	4	90%	3	80%	2	70%	1
	안전조회(TBM) 참석율			4	100%	4	90%	3	80%	2	70%	1
안전시설물 (8점)	가설전기 시설 관리 상태			4	우수	4	양호	3	미흡	2	불량	1
	안전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해체 상태			4	우수	4	양호	3	미흡	2	불량	1
안전활동 (31점)	현장정리 및 폐기물처리상태			4	우수	4	양호	3	미흡	2	불량	1
	자체 안전점검(공동구, 장비, 안전시설, 위험요인)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내용 숙지상태			8	우수	8	양호	6	미흡	4	불량	2
	위험작업 관리자 입회여부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 현장소장 참석			4	우수	4	양호	3	미흡	2	불량	1
개인보호구 (9점)	안전벨트 착용, 체결률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보안경 등 기타 보호구 사용률			4	우수	4	양호	3	미흡	2	불량	1
안전관리비 (9점)	정산서류 성실도			4	우수	4	양호	3	미흡	2	불량	1
	반입검사, 적정사용(현장 실투입)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안전사고 발생 (-32점)	부상재해			-6	3회	-6	2회	-4	1회	-2	없음	0
	중대재해			-20	-20							
	재해 지연보고, 은폐			-6	3회	-6	2회	-4	1회	-2	없음	0
외부점검 지적사항 (-21점)	시정조치			-5	3회	-5	2회	-3	1회	-1	없음	0
	과태료			-6	3회	-6	2회	-4	1회	-2	없음	0
	벌금			-10	3회	-10	2회	-6	1회	-3	없음	0
계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평가자 : 현장소장

작성일:

협력 업체	업 체 명			현 장 명								
	공사기간			평 가 기 간								
	공 종 명			202 / / ~ 202 / /								
	계약금액			평가자의견								
	공 정 율		현장책임자	현 장 소 장	직 위		성 명			(인)		
평가내용				배 점	평가기준						평점	
					A	B	C	D				
현장 관리 (30점)	전반적인 공사운영능력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타 공종과의 협조 및 통솔력, 문제해결능력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기술자배치의 적정성-숙련공배치율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지시사항 이행정도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관리 자안 전 의식 (35점)	협력업체 소장의 안전의식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대표자 관심도 현장방문 및 안전점검			10	3회	10	2회	8	1회	6	없음	4
	원청-협력업체간유기적인의사소통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관리자 안전업무 협조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안전 활동 (35점)	현장정리 및 폐기물처리상태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관리자의 작업장 순회점검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위험작업 관리자 입회여부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위험성평가, 협의체회의 현장소장 참석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작업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계				100							-	

안전시설물 설치업체 평가표

평가자 : 안전관리자

작성일 :

설 치 업 체	업 체 명			현 장 명								
	공사기간			평 가 기 간		202 / / ~ 202 / /						
	계약금액			평 가 자	직위	성명			(인)			
	평가자 의견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평점
				A	B	C	D					
현장관리 (30점)	책임자 현장 방문 관리 및 관리의지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현장 요구 사항에 대한 협조도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청구 서류, 증빙서류 완성도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인력운용 (20점)	작업인력 현장 상주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작업인력 적기 투입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작업인력 근태사항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업무수행 (30점)	기술인력 업무 숙련도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시설물 설치 완성도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현장 요구 기일내 설치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발주 기준에 맞는 적정시공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안전관리 (20점)	작업내용 위험성 평가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작업자 안전교육 및 TBM 실시		5	우수	5	양호	3	미흡	2	불량	0	
	작업자 보호구착용, 복장상태		10	우수	10	양호	8	미흡	6	불량	4	
계			100									-

DW 동원개발

안전보건 특약조건 이행 확약서

업 체 명		공 종	
주 소			
대 표 자			
현장대리인			

당사는 (주)동원개발 현장 공사를 수행하며 특약조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 및 시공하고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을 현장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작업을 시작한다.

현장 내 모든 관리자 전원이 특약조건을 숙지하여 계약 기간 내 동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 정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 대표이사 (인)

현장대리인 (인)

(주)동원개발 대표이사 귀중